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11월 26일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1월 12일, 도병두 의원
나. 회부일자 : 2024년 11월 12일
다. 상정일자 :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4년 11월 26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시각장애인은 청각 또는 활자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정보의 접근 및 사회활동에 한계가 있는 바,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행사의 현장 상황이나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여 제공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 향상 및 사회 참여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 및 지원(안 제5조 및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추병수

나. 검토의견

1) 제정 이유

○ 본 제정안은 시각장애인에게 행사의 현장 상황이나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여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보접근 및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의원발의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현장영상해설과 사업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 및 지원(안 제5조 및 제6조)

- 공공기관 등에 현장영상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인, 기관, 단체 등에게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규정함

3) 검토 의견

○ 「장애인복지법」 제4조에서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장애인이 겪는 불편함과 차별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일상정보의 습득이 어려워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고, 이용 편의성이 매우 취약한 실정임.

○ 본 안건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는 「금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조례」를 통해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조례로 대체 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음.

○ 하지만 본 조례안은 목적 대상을 시각장애인으로 하고 사업 수행을 금천구청 및 공공기관으로 명시한 점, 특히 매년 개최되는 다양한 구청행

사 및 공공시설 이용에 현장영상해설로 시각장애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안을 규정한 것을 볼 때 기존 조례와는 시행효과가 다르다고 판단됨. 따라서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이 문화 활동이나 현장 행사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원 입법 의지를 명확히 담아낸 것으로 조례 제정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